

공 시 송 달 서

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'귀화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'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니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송달서류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

1. 공시송달 대상자

연번	성명	출생년도	주 소	송달서류
1	마대영	1996년	전라남도 화순군	병역법 시행령 제155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'처분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통지'

2. 송달서류 보관 장소 : 광주·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
3. 공고기간 : 2019. 8. 13. ~ 2019. 10. 14.(2달)
4. 게시장소 : 병무청홈페이지 - 공개/개방 - 정보공개 - 공고/참여/소통 - 공시송달방
5. 문의사항 : 광주·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김진영(☎062-230-4233)

2019년 8월 13일

광주·전남지방병무청장



※ 본 공시송달의 효력은 2019. 10. 15.(0시)부로 발생합니다.